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6 선고 2018가단5131653 판결 [주식매매대금 청구 등의 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박세형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행

담당변호사 차행전, 김경민

변론 종결2019. 7. 12.

판결 선고2019. 8.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0.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와, 원고가 보유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발행주식 51만 주를 피고 B에게 2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 B을, "대상회사"는 D를 가리킨다).

제1조(양도할 주식)

- 매매주식 : "주식회사 D"가 발행한 보통 주식
- 양도할 주식 수 : 510,000주(총 발행 주식의 51%)

제2조(양도 금액 및 지급 방법)

- "을"은 "대상회사"가 발행하고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기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고 매매금액은 이억 원(₩200,000,000)으로 한다.
- 2017년 12월 15.일 계약금으로 금 일천만 원(₩10,000,000원)을 지급하고 자회사인 주식회사 E가 온라인대출정보연계 대부업자[P2P대출업자] 등록 기관 변경이 완료된 날(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http://fine.fss.or.kr>) 사이트에서 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 검색이 가능할 때)에 잔금 일억 구천만 원(₩190,000,000)을 지급하기로 한다.

나. 이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구체화하면서 D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실사 결과를 반영하여 2017. 12. 15.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와 'P2P연계대부업등록 조건부 인수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인수합의서상 "갑"은 피고 B과 F, G, H를, "을"은 원고를 가리키는데, 다만 F, G, H가 계약당사자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1. "을"은 (주)D 주식 57%와 (주)E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갑", "을"은 다음과 같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한다.

① (주)D

(가) 양수도 대상 : 주식 51%와 경영권 일체

(나) 양수금 : 2억 원

(다) 양도주식수 : 510,000주

(라) 양수금 지급 및 주식양수도 일정

(1) 2017. 12. 15일 - 계약금 1천만 원 지급 및 주주변경 완료

(2) 2018. 03. 30.일 - 잔금 1억 9천만 원(P2P연계대부업 승인 및 등록 완료 조건부 지급)

② (주)E

(가) 양수도 대상 : 주식 100%와 경영권 일체

(나) 양수금: 5백만 원

(라) 양수금 지급 및 주식양수도 일정

(1) 2017. 12. 15일 - 계약금 2백만 원일시불 지급 지급 및 주주변경 완료

(2) 2018. 03. 30.일 - 잔금 3백만 원(P2P연계대부업 승인 및 등록 완료 조건부 지급)

③ 등기사항의 변경

(가) (주)D와 (주)E(이하 "두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아래의 임원은 2017. 12. 15일
사임계를 제출한 후 대주주의 승인을 거쳐 등기임원을 선임한다.

(1) (주)D (사내이사 I)과 (감사 J)

(2) (주)E(사내이사 K)

(나) 기존 등기임원 외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를 등기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고, 정관변경을 통해
"갑"을 이사회 의장으로 지정한다.

2. "갑"은 두 법인의 이상 유무 확인이 완료되면 즉시 다음과 같이 증자한다.

① (주)D

(가) 증자금 : 1억 원

② (주)E

(가) 증자금 3억 원

3. "을"은 현재 두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본 합의 후 증자가 완료되면 (주)E를 P2P연계대부업체로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http://fine.fss.or.kr>)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2018. 3. 15.일까지 승인 및 등록을 마치고, 두 법인이 정상적으로 크라우드펀딩과 P2P연계대부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 2018. 3. 15.일까지 3항의 승인 및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면 모든 인수합의는 무효로 하고 본 합의계약은 해제한다.

① 1항의 주식양수도계약은 해제되며 "을"은 "갑"에게 계약금 1천 2백만 원을 반환한다.

다. 피고 B은 2017. 12.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및 합의에서 정한 D 주식 양수금 중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E는 2017. 5.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은 되었으나, 온라인대출정보연계 대부업 등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및 합의에서 정한 D 주식 양수금 중 잔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 및 합의의 해제 항변 (가) 피고 B은, 이 사건 합의에서 2018. 3. 15.까지 E의 P2P연계대부업체 승인 및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면 인수합의는 무효가 되고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정했는데, 2018. 3. 15.까지 위 승인 및 등록이 완료되지 않아 이 사건 계약 및 합의가 해제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구체화한 이 사건 합의 제3항에서 원고가 2018. 3. 15.까지 E의 P2P연계대부업체 승인 및 등록(이하 '이 사건 승인 및 등록'이라고 한다)을 마치기로 정한 사실, ② 이어 이 사건 합의 제5항에서 원고가 2018. 3. 15.까지 이 사건 승인 및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면 모든 인수합의는 무효로 하고 이 사건 합의는 해제하며, D 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은 해제되는 것으로

정한 사실, ③ 그러나 2018. 3. 15.까지 이 사건 승인 및 등록이 완료되지 못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제5항에서 원고가 2018. 3. 15.까지 이 사건 승인 및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면 이 사건 계약 및 합의가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정하였고, 원고는 2018. 3. 15.까지 이 사건 승인 및 등록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 및 합의는 자동으로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승인 및 등록은 E에 대한 피고 B의 3억 원 유상증자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피고 B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승인 및 등록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승인 및 등록 미완료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 및 합의가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기초사실과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대부업법령에 의하면 온라인대출정보연계 대부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기자본이 3억 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 사건 승인 및 등록을 위해서는 E에 3억 원 유상증자가 필요했던 사실, ② 이에 이 사건 합의 제2항, 제3항에서 피고 B은 E에 3억 원 등 두 회사에 증자를 하고, 원고는 증자가 완료되면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 이 사건 승인 및 등록을 마치기로 정한 사실, ③ 그러나 피고 B은 그 증자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합의에서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2017. 12. 15. 사임계를 제출하고 대주주의 승인을 거쳐 등기임원을 선임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그러나 두 회사의 임원 중 E 사내이사 K만이 사임계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합의에 의하면 원고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두 회사의 나머지 임원들의 사임계 제출', '이 사건 승인 및 등록'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 B은 '두 회사에 대한 유상증자'와 '양수금 지급'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② 원고의 이 사건 승인 및 등록 이행의무는 피고 B의 3억 원 유상증자가 선행되어야 하는 반면, 원고의 사임계 제출 이행의무는 그 이행기가 2017. 12. 15.로 정해졌고 피고 B과 무관하게 원고가

이행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합의 당시 두 회사의 경영상황(자본잠식), 두 회사에 대한 실사를 거친 이 사건 합의의 경과, 그 내용 및 체계, 양수금 대비 유상증자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유상증자는 두 회사 임원들의 사임 등 경영진 변경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렇다면 원고의 사임계 제출 이행의무는 피고 B의 유상증자 이행의무에 대한 선이행의무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합의 제2항에서 피고 B은 "두 법인의 이상 유무 확인이 완료되면" 즉시 증자한다고 정하였는데, '두 회사의 나머지 임원들의 사임계 제출'은 위 '이상 유무 확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⑤ 그러나 원고는 K의 사임계만 제출하였을 뿐, 나머지 임원들의 사임계는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 B이 3억 원 유상증자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인 원고의 사임계 제출 이행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승인 및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합의 제5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승인 및 등록 조건에 따른 이행거절 항변 (가) 설령 피고 B의 위 해제 항변이 이유 없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잔금 1억 9,0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승인 및 등록이 완료되어야 원고가 잔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 제1항에서 피고 B은 원고에게 D 주식 양수금 중 잔금 1억 9,000만 원을 E의 "P2P연계대부업 승인 및 등록 완료 조건부"로 지급하기로 정하였음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이상 피고 B은 잔금 1억 9,0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승인 및 등록은 잔금 지급의무의 '불확정기한'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승인 및 등록을 위해 피고 B이 선행하기로 한 3억 원 유상증자가 이행되지 않았고 피고 B에게 유상증자 능력, 의사도 없어 이 사건 승인 및 등록은 사실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므로, 잔금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반면 장래의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면 실현되는 시기가 비록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조건인지 기한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기초사실과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합의 제1항에서 D 주식 양수금 중 잔금 1억 9,000만 원을 이행기(2018. 3. 30.)와 별도로 "P2P연계대부업 승인 및 등록 완료 조건부"로 지급한다고 명시한 점, ② 이 사건 합의 제5항에서 이 사건 승인 및 등록이 완료되지 않으면 '모든 인수합의를 무효로 하고 본 합의계약은 해제한다', '주식양수도계약은 해제된다'고 하여 그 주식양수도 행위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 점, ③ 나아가 그 경우 원고는 피고 B에게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하여 이 사건 승인 및 등록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의 사후처리까지 규정한 점, ④ 이 사건 승인 및 등록이 완료되지 않으면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제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합의의 명칭도 'P2P연계대부업등록 조건부 인수합의'이며, 잔금 지급을 이 사건 승인 및 등록 완료에 연관시킨 것으로 보아, 피고 B에게 이 사건 승인 및 등록의 실현은 이 사건 계약 및 합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승인 및 등록은 기본적으로 그 성부가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인 및 등록을 그 사실의 도래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잔금지급채무를 반드시 이행한다는 취지에서의 불확정기한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정지조건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승인 및 등록이 불확정기한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주식 매매대금을 자신도 책임지고 지급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잔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위 약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고홍석